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2023.09.22(금) 14:00~17:00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강당

공동주최

가족구성권연구소, 나눔과나눔, 민달팽이유니온,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회복지연구소물결,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안산공동체미디어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목차

기존 ‘가족’ 너머에서 사회적 연대의 장을 모색하는 퀴어가족정치 _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3
생활동반자법과 어린이·청소년의 가족구성권 _ 빈둥(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11
주거 정책에서 호명되지 않는 존재들 _ 김경서(민달팽이유니온)	20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를 위한 친밀한 관계의 범위 _ 박진옥(나눔과나눔)	24
트랜스젠더퀴어의 삶, 가족, 가족구성권 _ 도균(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34
성소수자의 돌봄 실천을 통한 삶/관계의 재정립 _ 터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37
가족결합권 보장없는 10년의 이주노동자 체류와 동체 _ 정혜실((사)안산공동체미디어)	40
장애여성의 돌봄과 탈시설 그리고 가족구성권 _ 이진희(장애여성공감)	47

기존 ‘가족’ 너머에서 사회적 연대의 장을 모색하는 퀴어가족정치¹⁾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1.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가족구성권 운동의 새로운 국면

지난 4월 2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주도로 생활동반자법이 국회 최초로 발의되었고, 이어 5월 31일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다.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동반자법이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4년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했지만 일부 반대 여론을 의식하고 의지를 꺾은 이후로, 마침내 올해 이루어진 발의는 헌정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정상가족 너머의 삶’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어진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여전히 법적인 가족의 정의가 협소해서,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맺고 의지하는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시간은 국가의 법 보호 밖에서 존재해 온 성소수자를 포함한 ‘비국민’들이 겪는 차별과 고통이 강화된 시기만이 아니라, 가족제도의 불평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체들이 전면으로 등장해 온 시기이기도 하다.

탈시설 운동, 청소년/퀴어의 탈가정/탈학교 움직임, 성소수자/청소년 주거권 운동,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트랜스젠더/퀴어 운동 등 여러 방향에서 기존의 가족제도를 떠난 시민들이 새로운 소속, 관계,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혼의 장기화/지속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진행되었고, 노년에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다는 가치의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재난 시기를 거치면서 돌봄과 양육에 대한 사회화에 대한 요구들이 전례 없이 터져 나왔다. 이러한 흐름들은 더 이상 이전의 가족 질서로 돌아갈 수 없는, 그것에 기반을 둔 삶의 재생산은 불가능함을 인지하는 시민들의 출현과 만난다.

1) 본 발제문은 “가족끼리 알아서 생존하라고 하는 사회가 진짜 ‘위기’다” (김순남, 2023. 07.05, 일다), “‘가족’ 없어도 고립되지 않고 존엄하게 살수있는 사회”(김순남, 일다, 2023.07.12) 기사에 기반하고 있다.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사회에 이로운 시민과 아닌 시민을 구분하면서, 사회에 ‘이롭지’ 않다고 간주되는 시민들은 가족을 만들 수도, 만들어서도 안 되는 존재로 간주 해왔다. 즉,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시민의 삶과 연결시켜왔고, 이상적인 가족을 만들 수 없는 퀴어나 장애가 있는 시민들, 가난한 시민들은 이상적인 시민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 양 정당화해 왔다.

이러한 사회에서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많은 시민들은 ‘가족만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태도를 취했다. 장시간의 노동을 견디면서 일하고, 가족 중심의 돌봄노동을 통해서 가족끼리의 생존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간주했다. 이토록 가족끼리 생존해야 하는 것을 당연시 해온,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의 결과는 현재 어떠한가?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OECD 평균 자살률보다 2배 이상 자살률이 높은 나라이며, 저출생 지수 또한 세계 1위이다. 또한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 3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조사 중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친척이나 친구, 이웃이 있는지’ 묻는 공동체 연대성(Quality of Support network)에 관한 질문에서 한국은 2019~2021년 평균 38개국 중 38위였다.(참고 “[삶의 질 보고서] 한국인 만족도, OECD 꼴찌서 세 번째...콜롬비아 수준”, 아주경제 2023. 2. 20)

이렇듯, 개인이 경험하는 불평등이나 고립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가족끼리 알아서 생존하게 하는 우리 사회에서, ‘미래 없음’의 상태는 퀴어, 장애인, 여성, 가난한 사람들, 이주자 등 소수자만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니다. 미래는 특정한 계급이나 자원이 있는 시민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 또한 체감하고 있다. 이 실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사회적인 징후로 보고 접근할 것인가? 지금의 결과는 사회적인 유대와 연대의 부재이며, 기존 가족을 넘어서 상호의존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취약한 사회임을 의미한다. 가족끼리 알아서 생존하고, 생존을 맡길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사회적인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우리가 상실한 것은 사회적인 유대이며, 연대의 가치들이다.

사회적 재생산은 돌봄, 휴식, 관계에서의 소속감, 세대 재생산, 행복의 의미, 소속감 등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러한 필수적인 가치들을 가족에게 일차적으로 일임해 왔다. 시민들이 내가 누구랑 의지하고, 서로를 돌보고, 어디에서 머물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모델이 부재한 사회를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가 일상화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김현미, 2020)

이렇듯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가 전면화되고 있고, 한편으로 기존 가족을 떠나서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는 시기를 ‘가족구성권 운동의 새로운 시기’로

규정하고자 한다. 새로운 사회적 재생산 모델을 찾아가기 위해서 정치적이고 변혁적인 의제들을 교차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새로운 사회적 재생산 모델은 기존 가족 중심의 가족 질서 ‘안’에서 생존과 소속감을 가지고 돌봄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연대의 확장을 통해서 기존 가족 너머에서 돌봄과 상호의존을 확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가족 상황과 무관하게 개인이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삶이 재생산 될 수 없는 조건들을 ‘불평등’의 문제로 가시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사회적인 자원들-계급, 나이, 섹슈얼리티, 성별정체성, 여성, 장애, 이주, 싱글맘 등-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은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성소수자 집단만 보아도 그렇다. 성소수자 내부에서도 내가 누구랑 접촉하고, 어떤 세계와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삶에서 직면하는 고통이나 생존전략 등이 단일하지 않다. 한쪽에서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해 이주를 하거나, 해외에서 동성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하면서 ‘인정투쟁’에 개입하는 흐름들이 가시화되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일찍 집을 떠나서 탈가정한 ‘시민’으로 살아가느라 생존이 어려운 청소년 혹은 퀴어들을 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취약한 세계 속에서 서로 유대를 맺고 생존하면서, 커플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공동체를 만들고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실천하는 퀴어들도 만날 수 있다.

2. 기존 ‘가족’ 너머에서 사회적 연대의 장을 모색하는 퀴어가족정치

이렇듯, 사회적 재생산 위기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 운동의 새로운 시기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연대를 확장할지, 그리고 어떤 차별이 중요한 의제로 놓여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쉽지 않는 국면에 놓여 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가족구성권 운동의 주요한 흐름인 동성혼 법제화나,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는 법 제정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소수자들이 정의하는 생활동반자 관계의 의미를 더 교차적으로 연결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제안하고 진행했다. 청소년, 트랜스/퀴어, 장애, 이주, 빈곤, 양육, 돌봄, 주거, 장례/죽음을 둘러싼 여러 갈래의 불평등에 주목해 온 여러 단위들과 함께 말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장을 통해서, 기존에 사회가 상상해 온 이상적인 관계성, 돌봄, 양육 모델에 어떻게 개입할지, 그리고 어떤 삶의 동반자 관계들을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 낼지 함께 길을 여는 이야기장을 모색하고자 한다. 퀴어가족정치는 혼인평등 운동이나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정치가 성별이분법을 해체하는지, 시민적인 유대와 돌봄의 관계망을 확대하는지, 다양한 차별에 기반한 위계적인 관계의 문법을 해체하는지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사회권을 교차적으로 연결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퀴어가족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정치’는 기존 이성애중심적이고 성별이분법적인 가족의 협소한 정의를 폐지하면서 가족을 확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삶을 맡기는 가족주의를 넘어서 시민적인 유대와 연대를 확장하는 정치적인 실천이다(김순남, 2022).

가족제도와 불화하고, ‘불온한’ 시민으로 간주되는 존재들과 연대의 장을 모색해 온 퀴어 가족정치는 한국에서 가족을 구성할 권리 운동 초기부터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장애, 비혼 운동 등과 교차적인 만남을 통해서 확장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호주제 폐지운동 과정에서 가족을 저항의 언어로 정치화하면서 ‘정상가족을 해체하라’, ‘이성애중심성을 해체하라’ 요구하는 운동의 흐름이 이어져 왔다. 그 시기를 지나 현재는 기존 가족을 넘어 함께 살고 돌보고 의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토대, 즉 사회적 재생산의 정의를 요청하는 흐름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교차되는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 운동 또한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빈곤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 투쟁으로 이어져서 가족제도의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인 연대를 요청한다(이종걸, 2023). 이렇듯, 다양한 동반자관계와 상호의존이 가능한 사회변혁을 위해서 법적인 권리 운동에서 누락될 수 있고 전면화 되지 않을 수 있는 퀴어가족정치의 가치들을 아래에 논의하고자 한다.

(1) 결혼을 모든 시민의 토대로 상정하는 ‘그 정치’와 관계의 위계에 개입하기

한국 사회는 동성/이성 유무, 결혼/비결혼 유무, 가족/비가족 유무, 장애/비장애, 선주민/이주민이라는 여러 차원의 위계를 통해서 이성애 결혼/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를 유지해 왔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성애결혼/혈연중심으로 폐쇄적인 가족주의를 유지하고 시민적인 유대를 가로막는 관계의 위계를 정치화하기 위해서 혼인평등연대에서 동성혼을 중요한 의제로 조직화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건강가정기본법 폐지운동이나 생활동반자법 제정 운동 모두에서 이것은 동성혼을 법제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이유로 가족제도의 변화를 가로막아 왔고, 정상가족에 기반을 둔 결혼/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혐오정치의 전선에 동성혼이 호명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혼 운동은 동성커플이 결혼제도에서의 평등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제도에 변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동성혼 운동은 가족제도가 어떻게 이성애가부장제 정상성을 중심으로 작동해 왔는지에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인 현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퀴어내부에서도 누가 동성혼을 원하는지, 퀴어 내부에서 누가 동성혼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상상되는지,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서 이성애결혼과 동일하게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가족구성권 운동에서 중요한 평등의 모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논의를 요청한다.

무엇보다, 동성혼 전 단계로서 생활동반자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생활동반자법 전 단계로 생활공동체를 생각하는 관계의 모델들이 만들어 내는 규범성이 당연한 수순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동성혼 운동에서의 핵심은 국가권력이 시민의 삶에 작동하는 강제성에 개입하는 정치이며, 혼인과 무관하게 평등과 해방이 가능한 사회를 모

색하는 정치적인 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즉,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권력의 위계, 결혼을 해야만 출산이 가능하다는 정치의 위계, 결혼 중심으로 시민권이 작동하는 위계, 결혼/가족 중심으로 복지가 작동하는 위계 등 여러 갈래의 위계가 작동하는 국가의 강제성에 개입하는 정치를 통해서, 권력화된 결혼의 의미를 낙후시키면서 새로운 유대와 돌봄에 기반을 둔 연결을 확장시켜야 한다. 결혼은 이미 너무나 경제적이며, 불평등한 제도이다(나기, 2023.07.21). 때문에 결혼제도의 불평등을 정치화하는 과정은 이성애 결혼한 사람들과 ‘동등’함을 획득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차별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기보다는, 결혼을 모든 시민의 토대로 상정하는 ‘그 정치’에 개입하는 쪽에 가깝다. 또한, 이성 관계 안에서도 결혼할 수 없는 존재들, 즉 결혼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장애인들, 결혼과 무관하게 시민으로서 존엄하게 살고자 하는 존재들과의 연대의 장이어야 할 것이다.

많은 성소수자들은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소중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애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일상의 삶에서 동반자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듯, 애도의 불가능성, 삶의 존엄의 불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치의 방향을 택할 것인가? ‘배우자’ 중심의 권리, 그리고 2인이 동반자관계를 등록해야만 ‘가능한’ 애도나 동반자 관계를 인정받는 것만이 아니라, 왜 우리는 중요한 관계를 상상할 때 배우자이거나 커플로만 상상하는지, 왜 삶의 중요한 자리에 다양한 이름의 우정적인 유대는 중요한 관계의 모델로 상정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저항해야 한다. 관계의 서열과 위계를 공고히 하는 민법 779조의 가족범위 규정 폐지와 더불어 이성애 결혼/혈연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을 위계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필요로 한다.

(2)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기반하고 있는가?

현재, 용혜인 의원이나,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등록법에서는 명확히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영주권을 가진 19세 이상 성인이자, 2인으로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피성년 후견인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후견인의 허가를 얻어서 동반자등록법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생활동반자법이 논의되었을 때와 다르게 성인중심, 2인 모델에 기반을 둔 관계의 모델, 즉 동성혼과 유사한 생활동반자법 모델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묻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급격하게 다양한 관계성이 출현하고 있고, 기존 가족 너머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을 실천하고, 만들어 내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은 시점에서 무엇이 누락되고, 어떤 관계가 배제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영정이 ‘생활동반자법은 누구를 대변하는가’라는 일다의 기고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활동반자등록법은 많은 시민들이 호주제 폐지 이후 결혼/혈연중심성을 질문하는 매개로서 한국사회의 가족제도 변화를 이끌 대표적인 대안의 자리를 단단하게 지켜왔고’, ‘그 가족’ 없이도 내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저항의 의미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불분명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듯, 생활동반자 등록법 앞에서 마주한 당혹함과 법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생활동반자등록법이 혼인제도/가족제도 안에서의 신분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는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것, 당사자 간의 돌봄과 관계의 장이라는 의미에서' (나영정, 2023), 가족주의가 아닌 개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성을 더 급진적으로 의제화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헤어지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해소를 원할 경우에도 가능하며, 상속이 법에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혈연중심의 가족주의를 넘어서 개인들 간의 연합체로서의 동반자관계의 성격을 확장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을 함께 기획한 이유 또한 국가가 지정한 관계나 법안에서 갇힌 삶과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상호의존을 확장하는 친밀성 정치의 장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재생산 위기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소수자들은 '위기'에 순응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가 아닌 여러 갈래의 상호의존의 돌봄망과 친밀성의 정치의 장을 모색해 왔다. 생활동반자법에서도 성인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때, 기존에 가족관계의 억압을 떠나서 청소년/퀴어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또다시 주변화된다. 기존 가족을 떠날 수 있는 권리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가족구성권 운동에서 원가족이 부양의무를 책임지는 가족제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장애인들이 탈시설 이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다양한 돌봄 관계망을 만들고자 하는 '퀴어한/불구화된 존재들의 연대'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족과 시설로부터 관리되지 않고 '잘 의존할 수 있는 삶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요청하는 탈시설 운동의 흐름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전진에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이다(고나영, 2023.08.07.).

또한, 이주노동자, 난민의 '가족결합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퀴어가족정치는 지속적으로 법의 한계를 질문하고, 법의 한계 너머에서의 연대의 정치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가족구성권 운동에서 배우자나 커플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2인 중심으로 이상적인 관계를 상상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는, 모든 관계 안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폭력의 가능성과 관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취약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를 떠날 수 있는 권리'가 가능해지려면 여러 갈래의 연결과 의존을 '당연한' 시민의 삶으로 상상하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다양한 동반자 관계와 연대를 정치화하기

한 사회가 가족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정책화하는가는 한 사회가 어떤 가치를 공고히 하는지, 어떤 시민을 보호하는지, 어떤 관계를 사회에 이로운 관계로 배치하는지 볼 수 있는 토대이다.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1,400여 개의 현행 법률 중 240여 개의 법률에서 가족이 언급되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보훈/보상/포상, 재난/안전, 외교/안보/병역, 공공·민간영역의 선거 규제, 사회보장(보험/급여수급), 사회보장(취약계층지원, 사회서비스), 죽음/질병, 근로조건 규제, 교육, 가족관계 내 규제(가정폭력 등), 수형, 조세/각종 세법, 토지/주택, 행정/사법 등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 관여하고

있다. (김현경·나영정·이유나·장서연, 2021)

이토록 많은 법 조항들 앞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 단위만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그리고 개인이 의지하는 관계성 중심으로 국가의 복지가 운용되도록 하는 흐름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 질문의 핵심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법 조항에 포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연대를 확장할 수 있는 관계 맺기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우선 가족구성권연구소에서는 법적으로 관계를 등록하지 않고도 자신이 의지하는 동반자 관계를 ‘연대인’으로 인정하면서 의료결정권, 연명치료 결정권, 가족 돌봄 휴가, 강제입원이나 강제수용 등의 상황에서 법원에 구제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장례 등에서 삶의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주거에서도 함께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세대를 구성할 권리’가 주어지고, 공공주택 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임대차보호법에서 시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의제화하고자 한다.

법적으로 관계를 등록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삶의 동반자나 보호자로 인정하는 ‘연대인 제도’를 확장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인 싸움이자,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계를 맺을 권리를 확장하는 가족구성권 운동은 가족제도 안에서 시민으로 보호받지 못해서 함께 살아온 동반자관계들의 ‘실질적인’ 권리가 박탈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제로 인해 가족과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강제적인 조건들이나, 충분한 돌봄과 양육에 대한 지원 부재로 인해서 자녀를 입양 보낸 억압적인 입양정책의 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교차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재생산 위기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퀴어가족정치는 기존에 이성애 규범적인 시민 모델이 만들어 내는 폐쇄성, 부양자-피부양자에 기반을 둔 부양의무제 그리고 가족 불평등을 보이지 않게 하는 가족/결혼에 대한 낭만화된 접근들, 부양 돌봄과 생존을 모두 가족에게 일임하는 가족제도 자체를 재구성하는 정치이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재생산 정의를 향한 연대의 장을 시급하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논의해야 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회적 재생산 정의는 삶이 이어지는 데 필수적인 소속감, 유대, 상호협조 등과 관련해 ‘가족중심, 혈연중심으로 삶이 재생산된다’고 간주하는 사회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구적인 인구정책을 넘어서, 기존 가족 단위로 삶의 재생산을 일임해온 가족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족을 떠나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급진적인 상상과 가족제도의 불평등에 대한 개입을 요청한다. 그러한 세계가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혼인평등 운동과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포함하는 가족구성권 운동이 사회적 재생산 정의를 향한 변혁적인 전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과도 더 교차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져야 하며, 상호의존하고, 연대하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공론장을 채우기를 고대한다.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참고문헌

-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오월의 봄 .
- 김현경·나영정·이유나·장서연, <2019 이슈 발굴 및 논의를 위한 N 개의 공론장 ‘법이 호명하는 가족의 의미와한계’ 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021.
- 김현미, 2020. “코로나 시대의 ‘젠더 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의 미래”, 『젠더와 문화』 제13권 2호.
- 나기, 2023. 07.21 “결혼은 너무 ‘문제적’인 제도라서”, 일다.
- 나영정. 2023. “생활동반자법은 누구를 대변하는가?”, 일다.
- 고나영, 2023.08.07. “가족’밖’에서 울타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도전”, 일다.
- 이종걸, 2023. “혼인평등, 가족구성권,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 운동 ‘사이’”, 일다.

생활동반자법과 어린이·청소년의 가족구성권

빈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올해 4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실에서 대표하여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해진 가족에 대해 인정해야 함과 더불어 현행 법체계가 가족에 대해 협소하게 정의하는 상황에서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생활동반자관계가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법률로 보호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다양한 돌봄 관계에 대한 인정으로 고독과 돌봄 공백을 해결해 국민의 경제적, 정서적 안전망 강화를 이유로 덧붙였다. 그리고 5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실에서 대표하여 동일한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제안 근거는 용혜인 의원실과 비슷하게, 혼인과 혈연을 벗어난 형태의 가족들이 제도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혈연과 혼인 외의 이유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법에서 규정한 생활동반자관계는 허락 가능한, 한정된 이들의 관계에 불과하다.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해 이주민, 장애인 등은 해당 영역 안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생활동반자법 제안 이유에서 표방하는 다양성은 제한된 범위의 표현이다. 우리는 누구를 '시민',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끌어들이며, 법률의 보호에 머무르게 하는지 조명하고 질문해야 한다. 주체로서 존재하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배제되어온 다양한 존재들의 영역에서 나온 고민들을 결합하고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새로운 틀을 궁리하여 담론들을 확장해야 한다. 지배적 논리로서의 법과 제도에 도전하고, 중심이 되는 다수의 논리를 분별하면서 비판적 의제의 열개를 만들어가야 한다. 본 글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을 포함해 기존 법제와 가족 담론 등에서 어린이·청소년이 어떻게 (비)주체화 되고 동등한 시민에서 누락되어 왔는지 질문하며 어린이·청소년이 사회 공간과 부정적 형태로서 맺는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비청소년 중심의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열고자 한다.

국가와 가족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 속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무능력, 미성숙 가정(假定)은 그들을 보호받아야 할 위치로만 대상화할 뿐 아니라 주체로서 비가시화 하였고, 독립적 개인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점을 필연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왔다. 비청소년 중심의 사고가 상식이 된 사회구조 속에서 나이화(化)된 역할의 수행과 실천은 어린이·청소년을 시민의 자격에서 제외하고 친권자, 보호자, 양육자 등의 이름 밑에 종속적인 위치로 두었다. 이는 체계적으로 정당화 된 문화가 되었고, 어린이·청소년은 사회와 가족 등 여러 영역에서 함께 논의하거나 의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에서 철저히 제외되었다. 어린이·청소년의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는 어린이·청소년의 동등한 참여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를 반대하는 조건들을 해체하고, 위계질서에 바탕을 둔 보호(억압)에서 벗어나 동등한 시민의 위치로 끌어올리려는 원칙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 생활동반자법이 불허한 (비)주체 : 어린이 · 청소년

용혜인 의원실 발의안 내용	장혜영 의원실 발의안 내용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동반자관계"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성년이 된 두 사람 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생활동반자관계"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이 아닌 성인과 다른 혼인 중이 아닌 성인 1인 이 합의 하에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생활돌봄을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를 말한다.
제2장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제7조(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능력) ① 성년이 된 사람 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제2장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제5조(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능력) ① 성년이 된 사람 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제14조(생활동반자관계의 무효) 생활동반자관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간에 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 3.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생활동반자관계의 무효) 생활동반자관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간에 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 3. 제6조를 위반한 경우
제19조(생활동반자관계 해소와 자의 양육 책임) ①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함께 양육하여야 할 자(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意思)·나이와 양육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④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부부로서"를 "부부거나 3년 이상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하는"을 "하거나 1년 이상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의 한쪽이 다른 한쪽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양육능력"으로 한다. 제90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p>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상대자·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다른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p>	<p>있어서의 배우자"를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p> <p>친양자는 그를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로 본다. 이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p>
--	---

생활동반자법의 정의(1장 제2조), 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능력(제7조), 생활동반자관계의 무효(제14조)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법률상 ‘미성년자’)은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없다. 다양성을 내세우며 혈연과 혼인 외의 이유로 관계를 맺는 이들을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법안 제안 취지에 어린이·청소년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실제로 나와 타인의 관계 맺음은 나이와 능력 등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어린이·청소년이 미성숙하고 무능력하다는 전제와 그로 인해 보호를 해야만 한다는 관점과 달리 어린이·청소년은 법적 가족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일상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고, 상호 돌봄을 주고받는다. 또한, 법적 가족을 벗어나 탈가정을 하게 되었을 때도 생존을 위해 일 자리를 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맺기도 한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이 관계에 대한 정의를 제한해 놓은 것은 기존 법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양립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상 어린이·청소년은 ‘제한능력자’이다. 제한능력자는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 어린이·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어린이·청소년은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생활동반자법은 기존 법체가 갖는 차별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현행 법체계가 보호하지 못 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배제한 채로 만들어졌다. 어린이·청소년이 등장하는 곳은 용혜인 의원실 법안의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와 자의 양육책임(제19조)과 장혜영 의원실 법안의 다른 법률의 개정의 양육(부칙 제2조)뿐이다. 어린이·청소년은 관계 형성의 주체가 아닌, 양육을 받는 자(子), 대상으로만 상정한 것이다.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기본 전제가 성인(成人), 즉 비청소년이기에 어린이·청소년은 관계 구성과 해체의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존재, (비)주체가 된다. 비청소년 중심에 기초한 법제와 사회, 문화 등은 나이에 따라 분업을 구성한다. 시민의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자로 분리된 (비)주체로서의 어린이·청소년은 부정적 형태로 사회 공간과 관계한다. 생활동반자법을 포함해 현행 법제는 어린이·청소년을 지금 주체로서 삶을 살아가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는 존재로 보지 않고, 오히려 어린이·청소년의 동등한 참여를 부정하기 위해 능력과 성숙이라는 조건을 내달면서 비청소년 중심의 사회 위계질서를 보호한다. 이러한 체계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비청소년중심주의에 벗어나지 못한 담론들과 결합하면서 어린이·청소년은 '집'에서 마땅히 '부모'와 함께(그 통제 아래) 살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집을 나간 어린이·청소년은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 등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의 딱지를 붙이게 된다.

2. '다양한 가족', 가족 담론과 비청소년중심주의가 놓치는 것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은 모든 대상에게 통용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의 <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92.3%),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85.8%),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84.2%),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69.8%),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69.3%)에 관해서 높은 편이다. 반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49.0%)과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26.1%)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개인적 수용에서는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59.5%)와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45.5%)에 대해서 수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통계 결과에서 사회적 인식이 긍정화하는 가구 대상은 비청소년 1인가구, 이성 간 관계 및 부부 중심이며, 결혼 가정에 있는 자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포함해 청소년은 감히 친권자가 있는 가정을 벗어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것 같지 않은가.

사회적으로 가부장제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담론들이 이어져 왔지만, 어린이·청소년은 주되게 양육자들의 자식 양육 안에서 다뤄졌다. 자식은 양육자에 의존되고 딸린 존재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청소년의 독자적인 행동과 삶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되지 않았다. 어린이·청소년은 비청소년과 동일하게 사회 공간상 영역을 배치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의 이야기에서도 비가시화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존재는 가정과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며,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질문되지 않고, 응당 친권자 및 보호자의 보호 속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사회가 옳다고 간주하는 규범에 포섭된다. 사회가 허락한 범위(가정, 학교)에 배치된 어린이·청소년은 정치·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를 부정당하고 성숙할 기회를 빼앗긴다. 의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없는 어린이·청소년은 어느 곳에서든 비청소년과 평등하게 존중받지 못한다. 같은 시민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이·청소년은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라고만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가사노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 최근 연구들은 자녀가 적지 않게 가사노동을 수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Alvarez & Miles-Touya 2012; Colge & Tasker 1982; Hu 2015; 김경준·이

윤석 2020) 대체로 가사노동을 자녀의 사회화 과정으로 보며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확인한다든지, 가구형태에 따라 자녀의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를 살핀다든지, 부모의 가사노동이 자녀의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면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에 차이를 말하는 것에 그치지만 말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자식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지만, 친권자의 가사노동과는 다른 질문들을 던지며 자식은 상호작용 관계를 함께 형성한다기보다 주로 친권자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친권자와 자식의 가사노동 양상과 형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린이·청소년의 가사노동을 비청소년의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유급노동을 주장하는 말은 왜 논의되지 않을까. 같은 노동임에도 누구에게는 무임금이 당연한, 사회화로 통칠 수 있는 것이 되며 누구에게는 힘들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되는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기존 가족 담론은 이러한 맥락에서의 가정 내 친권자(비청소년)-어린이·청소년의 위계 질서를 포착하지 못한다. 그것을 정당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비)주체인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일상과 삶에서 주요 결정권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이사나 여행 등을 포함해 본인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은 함께 논의하여 결정되기보다 친권자의 판단과 상황 등에 의해 결정되곤 한다. 친권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본인의 할 일이 되기도 한다. 일기장 검사나 휴대폰 압수 등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연애 생활을 규제하거나 진로 등을 강요하기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사용하는 등 가정에서 친권자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인권 침해는 다양하게 이뤄진다. 하지만 친권자(비청소년)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사회적 통념 아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청소년을 예속적 관계로 둘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친권자라고 해도 보다 높은 권력의 위치에 있는 이의 말과 행동은 강제적으로 다가가기 쉽다.

'가족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신화라는 주장이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가족 내 남성에 의한 여성과 자식 통제와 지배를 폭로하며 아내폭력과 함께 아동학대가 주목받았지만, 어린이·청소년의 지위 개선은 요구되지는 않았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 친권자가 얼마나 나쁘고, 피해 아동은 얼마나 불쌍한지에 대한 감상 속에서 친권 제한과 박탈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됐다. 2021년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민법 제915조)이 삭제되었지만, 법 조항 하나 사라졌다고 어린이·청소년의 실질적인 지위가 올라간 것은 아니기에 그 삶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 여전히 어린이·청소년은 친권자의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 "말대꾸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친권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체벌을 경험한다.

그렇다면 법적 가족이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나에게 어떤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어린이·청소년이 집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가출' '비행', '위기' 등의 이름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을 붙이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위협한 존재로 낙인 찍는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이 스스로 집에서 탈출해서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보호 체계는 없다. 심지어 집을 나온 어린이·청소년을 빨리 발견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종아동지원및보호에관한 법률 (이하 ‘실종아동법)」 (제1조 목적) 집을 나온 어린이·청소년은 ‘실종아동’이 되는 데다 (정의 제2조), 타인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도 타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고,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제17조 벌칙)이라는 강한 형량이 적용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다. 해당 법은 어린이·청소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질문하지 않는다.

안전하지 못한 ‘집’을 벗어난 탈가정 청소년은 더더욱 부정적 형태로 사회 공간과 관계를 맺는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조차 못 받거나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는 열악한 일자리로 밀려나기 쉽고, 어리다고 모욕을 당하거나 임금을 떼어먹히고 쫓겨나는 경우도 다반사다. 탈가정 청소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인 쉼터와 같은 시설을 전전하며 좁은 공간에서 단체 생활을 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래 집단을 만나 팸을 형성하여 친밀 관계의 성립과 해체를 반복하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떠할까? 빈약하지만 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은 이해하기도 복잡하고, 실제 활용하기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의 경우는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공무원들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업데이트하면서 안내하기보다 관행대로 무작정 거주시설 입소를 권유하는 문제도 있다.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정책과 체계는 부재하다.²⁾ 기존 법제와 가족 담론 등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은 가족에 귀속되는 존재로만 볼 뿐 자립을 돕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나 그들이 겪는 인권침해, 지위중속, 불평등과 불인정, 억압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3. 어린이·청소년의 가족구성권을 위한 상상력

어린이·청소년이 가족구성권,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관계 전반에서 친권자 혹은 보호자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을 바꿔나가야 한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 욕구나 욕망들을 어린 나이의 투정이나 배부름 등으로 설명하지 않고, 동등한 시민 개개인이 갖는 욕구, 사회적 권리로 재정의하고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부정하는 선제조건인 나이와 능력으로 인한 권리 규제를 해체해야 한다. 친권자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리고 이를 보조해 나가야 한다. 나이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핑계로 만들어낸 권력과 격차가 나이를 의미 있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기존 법제와 문화의 비청소년 중심적 위계질서에 도전하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실제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2)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2020) "2019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연구보고서 [청소년]과 [주거권]의 만남 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의 현재와 대안탐색", 60쪽

또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실제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문제 삼고, 개인이 요청할 수 있는 보호로 전화됨으로써 새로운 욕구와 제도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이 열악한 노동에 내몰리지 않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벗어나더라도 충분한 주거 시설을 보장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속에서 규제와 통제를 받으며 일상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민법상의 법률행위 제한을 개정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 안에서 사회와 친권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수행하길 요구하는 일들은 시민으로서의 어린이·청소년의 시간과 자원을 앗아간다. 해당 문제를 공공의 의제로 다루고, 어린이·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서 그들의 삶의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인식해가며 적극적으로 사회 제반에 의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가정 내 어린이·청소년인권 침해에 관해 ‘청소년인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권리이자 공간으로 존재하는 친권과 가정을 어떻게 사회화, 공공화, 민주화시키느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권리이자 의무인 친권 자체를 축소시키고 그 내용을 사회적인 부분으로 이양하자고 말하며 가정과 사회의 방식과 청소년들의 지위 자체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권자와 청소년의 관계, 그에 관련된 사회경제문화적 구조를 바꾸고 가정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청소년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친권자의 과도한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 역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³⁾ 이처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권리 투쟁은 사회 여러 법제와 재생산 구도를 바꾸려는 시도와 함께 가야 하며, 보호라는 이름의 억압에서 벗어나 비청소년과 동등한 시민의 지위로 끌어올리고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3)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했다. ▲ 사회적 공동양육 시스템 도입과 점진적 확대 ▲ 친권자가 어린이·청소년을 심리적으로 '분리'하지 못해서 일어나게 되는 갈등이나 문제를 방지하고 친권자가 어린이·청소년들과 적절하게 관계 맺게 해주기 위한, 그리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체계의 강화 ▲ 청소년들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청소년 생활 보조 제공, 독립 지원, 노동 기회 확대 (청소년 노동의 문제는 다른 글에서 다루므로 더 이상 자세히 쓰진 않겠다.) ▲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벗어나거나 탈출하더라도 주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의 시설이나 시스템 확립 (주거권 보장) ▲ 친권자(대개 부모)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교육·보육 시설 ▲ 가정에서의 체벌 금지 등 청소년인권 침해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사회적 상식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조치와 운동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이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3.7]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3.7]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을 뜻 하는 말이다.

[전문개정 2011.3.7](출처: 민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 시행 2023. 6. 2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참고문헌

- 김경준·이윤석(2020),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과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 자녀의 성별과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 『한국조사연구학회』, 제21권 3호, 142쪽
- 여성가족부(2021) "2021 가족다양성에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2020) "2019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연구보고서 [청소년]과 [주거권]의 만남 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의 현재와 대안탐색", 60쪽

기타자료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아수나로 BOOK] 친권과 가정의 '사회화'"
<https://cafe.naver.com/asunaro/1014>. 검색일 : 2023.09.10.

주거 정책에서 호명되지 않는 존재들 - 우리가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

김경서(민달팽이유니온)

1. 서론 : 권리의 범주

민달팽이유니온은 최근 몇 년간, 가족구성권의 실현을 위해 주거권이,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가족구성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설명해왔다. 민달팽이유니온이 권리 간의 교차성에 주목했던 이유는, ‘주거운동’이 흐르는 방향에 어떤 변곡점이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일한 시기에 여기저기서 소수자들의 집에 관한 증언 혹은 담론이 쏟아졌고 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집’과 관련된 담론이 ‘부동산’, ‘재개발’과 같은 경제적 개념 혹은 ‘가족’, ‘결혼’과 같은 사적 개념, 둘 중 하나의 맥락에 편입되어 발전해 온 사실을 생각해본다면 소수자 운동 진영에서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색다른 일이다.

그러나 대출, 분양, 상속 등의 단어를 이야기해야 할 때, 나는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권리’와 다소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성소수자에겐 아파트가 허락되지 않는다?” 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을 때에 그 생각은 확신이 되었다.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본래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계급과 정상성의 상관관계이지, 아파트 거주 여부가 아니었다. 그때 알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애초에 이해한 적이 없다는 걸, 그들의 언어로는 우리의 존재와 욕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그 근래 결혼과 관련해 귀어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아파트 분양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는 말이었다. 그때의 처참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실로 결혼제도에 편입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혼은 너무나 계급적이고 그래서 너무나 중요했다. 그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생존이나 다름없다. 혼인, 혈연관계의 정상가족 단위로 복지 시스템을 배치해 놓은 국가 안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안전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체제적 위기 아래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제도와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혼인제도에 편입되어야만 생존이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자유롭게 안전할 수 없다. 혈연을 통해 자본이 상속되는 세상엔, 권리가 아니다.

2. 중산층 중심의 주거정책

한국의 주거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그 말은, 가족이 되지 않으면 주거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때의 가족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2010년대에 들어서야 마련되었다. 그 ‘1인가구’조차도 사실은 주거 정책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일컫는 개념에 불과하다. 실제로 1인가구 주거정책은 사실상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하는 청년주거정책이나 다름없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거정책 자체가 고소득자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크게 삭감된 주거정책 예산을 확인하면 빠른 이해가 가능하다. 주거정책의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예산은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5조7729억원 삭감됐다. 반면 분양주택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은 1조1138억원가량 증액돼 전년 대비 3배 이상 규모가 됐다.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정책이 아니라 소유권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렇게 헛발질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 한국의 주거정책 성적표는 말 그대로 최악이다.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전체 주택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정부가 사들이는 매입임대주택이 있지만 아직은 규모가 소소하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대량 공급된 행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비싸서 취약계층 진입이 어렵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과의 결탁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큼 비싼 임대료와 민간 중심 수익구조를 가진다.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 떠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을 발표했다. 분양이라는 형식이 가진 계급적 한계는 차치하고라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자에게 가는 시세차익이다. 국가가 앞장서서 투기를 권하는 셈이다. 참고로 한국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수가 170만이 넘는다. 고시원에서는 화재로 사람이 죽고, 반지하에서는 폭우로 사람이 죽고, 전 세사기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과연 이들이 공공분양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층에 68%가량을 할당했다지만, ‘가난한’ 청년에게 분양받을 돈이 있을까?

3. 인구정책으로서의 주거정책

고소득자를 위한 소유권 중심의 주거정책 방향과 더불어 한국 주거정책의 또 다른 특성이 하나 있다. 주거정책을 인구정책, 즉 ‘저출생’ 대책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1인가구 주거정책이 유독 청년세대에만 집중된 이유는 바로 이런 특성 때문이다. 청년이라면 당연히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혹은 낳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나 신념이 자리하고 있다. 청년세대가 아닌 1인가구는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1인가구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 노인임에도 청년세대에 하듯 대대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빈곤통계연보 참조). 그런가 하면, 중년 여성은 그야말로 사각지대다. 해당하는 정책이 여성 일자리 연계 지원 말고는 무엇도 없다.

공공임대주택 종류만 보더라도 인구정책으로서의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경우 1인가구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불리는 ‘원룸’을 공급한다. 앞서 말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나이,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히 넘볼 수 없었다. 이는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이자 빈곤에 대한 편견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고, 실제로 1인가구가 급증하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행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등장했다. 하지만 1인 청년 가구에 주어지는 집은 대체로 원룸이다. 원룸은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다. 최저주거기준을 겨우 상회하는 5~6평짜리 원룸 안에서 1인가구는 식사, 공부, 수면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이런 집을 공급하는 이유는 1인가구를 임시적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곧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국가에 인구를 보탬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에는 ‘정상가족’을 이루기 전까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재생산만을 보장하는 임시거처가 주어진다. 1인가구를 독립하기 전의 원가족에 예속된 상태로만 바라보기도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서도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개별급여 중 주거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나 30살 미만 비혼 청년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원가족과 따로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한하며, 독립가구가 아닌 분리가구로 인지한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처럼 정부는 1인가구 주거정책의 ‘실제 대상자’를 궁극해 하지 않는다. 청년주거정책, 아니 인구정책의 하위 카테고리로 인식할 뿐이다.

4.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의 정책기조는, 혼인하지 않으면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 혹은 협박이나 다름없다. 혼인과 혈연으로 만들어진 정상가족 체제에서 탈락한 이들은 복지 시스템에서도 탈락한다. 그리하여 인구정책이나 다름없는 정상가족 중심의 주거정책은 곧 계급 재생산 수단으로 작동한다.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칼날이 사람들의 삶을 재편하고, 복지가 장악하지 못한 빈곤의 자리는 시장이 잠식한다. 자본과 정상성은 그렇게 툽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탈락한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간다.

정상가족에서 ‘탈락’했거나 정상가족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혼자가 편한 사람들, 이성

애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함께 살지만 앓을 뿐인 사람들, 어찌다보니 공동체가 된 사람들. 정상‘가족’으로 묶이지 않는 관계의 모든 사람들. 국가는 우리를 부를 이름을 찾지 못해 결국 ‘1인가구’라고 부르고 있다. 선택지에 결혼과 1인가구 밖에 없는 셈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혼인제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지 자체를 다시 쓰는 것이다.

혼인제도 아래에서는, 가족정책이 곧 인구정책으로 치환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태생적으로 ‘노동’인구의 ‘재생산’을 목표로 한다. 앞서 말한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주거정책과는 영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지만 한국은 생각보다 거리낌없이 정상인구와 비정상인구를 분류해 인구정책을 시행해왔다. ‘정상적인 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몸은 꾸준히 ‘집’ 바깥으로, 가려지고¹⁾ 버려졌다.²⁾

주거운동에서 ‘가족’이라는 단위는 매우 중요하다. 당장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애적 관계 외에 발생하는 돌봄공동체, 주거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해야만 실질적인 복지 시스템의 재현이 가능하며, 동시에 가족 단위에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부담시키지 않아야 한다. 주거정책이 실제 주거빈곤층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가족이 짐이 되지 않도록, 돌봄을 사회화 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족은 개인의 삶을 재편할 수 있는 가장 사회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는 혼인제도의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오랜 시간이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자.

* 본 글은 2023년 8월 6일 한겨레21에 기고한 글을 바탕으로 변형되었습니다.

1) 김진주, “단칸방에 다닥다닥” 코로나 ‘시한폭탄’ 시설에 갇힌 장애인들, <<한국일보>>, 2021.01.18.
2) 강혜민, [소록도 100년] “그곳에서 부부로 같이 살려면 단종·낙태를 해야만 했다”, <<비마이너>>, 2016.06.21.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를 위한 친밀한 관계의 범위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1. ‘내 뜻대로 장례’를 준비하고 싶었던 할머니

지난 7월 말,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인 나눔과나눔으로 할머니 한 분이 장례 상담 전화를 했다. 80대 중반인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공영장례 관련 보도를 보고는 상담 센터에 장례를 부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미혼으로 자녀도 없었고 당연히 부모도 모두 사망해 직계가족이 한 명도 없었다. 형제들은 모두 돌아가신 상태지만, 조카들과는 가까이 살면서 관계도 좋았다. 그렇다고 조카들에게 장례 부탁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스스로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다. 할머니에게는 본인 소유의 집 한 채도 있고, 장례 비용도 마련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요청사항은 내가 장례비용을 줄 테니 첫째, 미리 장례를 약속받고 싶다. 그래서 할머니가 죽으면 시신을 화장해서 해양장으로 뿌려달라는 것, 둘째, 남은 재산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유산기부 하고 싶으니 대신 전달해달라는 것이다. 장례와 유산기부에 대해서는 조카들도 동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생전에 ‘내 뜻대로 장례’를 약속받고자 하는 할머니의 소원은 현행 법률로는 불가능하다. 즉, 혈연과 법률혼의 관계가 아닌, 나와 친밀한 관계의 사람 또는 누구든 생전에 장례를 부탁한 후 사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장례를 치르는 일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함께 시도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며 결국 포기했다. 할머니는 생전에 내 돈 가지고 내가 장례를 준비하고 싶다는데 법이 왜 못하게 하는지, 그리고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마지막 말만 남겼다.

2.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애도할 권리’의 범위

요즘은 예전과 달리 가족 및 가구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게다가 결혼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사람, 고아로 홀로 살아온 사람,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홀로 남은 사람, 가정 안에서 소외되거나 단절된 사람, 미혼모, 미혼부, 독거노인, 친인척이 이민 상태이거나 돌보지 않는 사람 등 슬픈 개인사가 존재한다. 앞서 ‘내 뜻대로 장례’를 준비하고 싶었던 할머니의 경우와 같이 부모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동이거나 또는 형제마저 모두 사망한다면 법적으로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자가 된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다양한 관계의 친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법적 애도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람은 아니다. 이처럼 법적 관계가 아닌 친밀한 사람이 장례를 준비하는 순간, 이들은 사랑

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 상실과 비통함 가운데 고인을 애도할 권리에서 배제되고 만다. 현행 법률에서 ‘애도할 권리’의 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애도할 권리’의 범위

사람이 사망하면 장례 할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연고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2조 제16호에는 연고자의 범위, 즉 장례를 치르고 ‘애도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고자’란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¹⁾,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연고자 범위는 민법에서 정한 혈족 및 가족의 범위와 비교할 때 매우 협소해 일반적으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며느리, 사위, 삼촌·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등이 연고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민법상의 혈족과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하지만, 사망자의 연고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장례를 통해 ‘애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돌봄관계, 사회적 연대 관계, 종교활동 관계 등 사망자가 살아 있을 당시 관계를 맺었던 비혈연 관계의 다양한 관계 역시 법률상 ‘애도할 권리’에서 배제되어 장례를 치를 수 없다.

나. 「의료법」에서의 ‘애도할 권리’의 범위

‘애도할 권리’는 근본적으로 「의료법」에서부터 제한된다. 그 이유는 장례를 치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사망진단서 발급이다. 그런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결국 ‘애도할 권리’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망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진단서 등은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지급할 수 있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즉,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면 형제·자매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형제·자매’는 연고자에 해당하고 장례를 치를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고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관계 단절을 이유로 시신을 위임한다면 법률상으로 ‘형제·자매’는 병원에서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되어 결국 형제의 ‘애도할 권리’는 박탈된다.²⁾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자치구청장 등과 ①노숙인복지시설의 장, ②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③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④정신요양시설의 장, ⑤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말한다.

2) 김민석, 2021.7.11,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만날 수 없었는데, 죽고 나서 부고는 알려주네요,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1100582567_851 에서 검색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아목에서의 '애도할 권리'의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애도할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제2조 제16호 아목에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어 확장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는 재량행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아무리 시신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연고자로 인정하기 쉽지 않았다.

다행히 2020년 보건복지부는 ‘장사업무 안내’에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고인이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된 이후 법적 연고자가 아닌 이들도 장례 할 수 있는 길을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률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고자가 아닌 제삼자 중에서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구체적인 예시를 다음 네 가지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부부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장례도 치를 수 없었다. 이제는 사실상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로 혼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사실상 가족관계인 사람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부상으로 법률적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친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즉, 법률적 가족관계는 아닌 아들이 생모를 돌봤을 경우, 그리고 실제로 혈연의 형제 관계이지만, 각기 다른 집에 입양되어 법률상으로 형제 관계가 아니어도 장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조카와 며느리 같은 친족관계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일반상식과는 다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카와 며느리는 연고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 조카와 며느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도 법으로는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치를 방법이 없었다. 네 번째는 장기적·지속적 동거·부양·돌봄 관계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장기간 지속해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한 경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사람도 장례를 할 수 있다. 즉 누가 봐도 가족처럼 생활했다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는 법률혼과 혈연 중심이다. 문제는 생전에 이를 인정받을 수 없고 사후에만 신청하게 되어 있는 한계와 명확하게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가족 대신 장례’와 ‘내 뜻대로 장례’가 법률로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표 1】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구체적인 예시

구분	구체적인 예시
사실혼 관계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사실상 연고자 관계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으로 친자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실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바목의 관계로 확인되는 경우
친족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되지 않는 친족관계(조카, 며느리 등)
장기적·지속적 동거관계 장기적·지속적 돌봄관계	장기간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유대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의 ‘애도할 권리’의 범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제12조가 개정되면서 제12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³⁾ 이로써 ‘무연고 사망자’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무연고 사망자’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가족 대신 장례’ 지침이 법적 권리와 의무로 규정됨으로써 법률혼과 혈연 중심 사회의 종언(終焉)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무연고 사망자’의 ‘애도 받을 권리’와 ‘애도할 권리’를 위한 한국 사회의 큰 진전이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해왔던 시민사회 단체의 꾸준한 변화의 시도와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 대신 장례’ 조항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조항이다. 다시 말해 사망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까지의 연고자를 파악한 후 고인이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면 친밀한 지인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망하자마자 바로 장례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이 서울시의 경우 평균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이번 법 개정 사항 중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다. 바로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도 유언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장례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연고자가 될 수 없다. 유언의 능력과 내용은 민법이 정하고 있다. 여기에 장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유언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조문의 본질적 내용은 ‘연고자 파악이 끝난 후 유언에 따라 지자체의 결정에 의해 유언을 받은 사람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⑥ (생략)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표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장례주관자

구분	구체적인 예시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 종교활동 관계 사회적 연대활동 관계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관계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마. 「민법」에 따른 유언에서의 ‘애도할 권리’의 범위

사람들은 흔히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으면 모든 것을 고인의 뜻에 따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장례 관련된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상 유언은 법에 정해진 사항⁴⁾만 할 수 있는 행위다. 즉, 시신의 인계 및 장례에 관한 사항은 유언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장례를 누군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해달라고 유언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즉, 재산에 대한 유언을 제외하고 장례와 같이 고인이 남기는 여러 유언 사항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 만약 고인이 화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자녀들이 고인을 매장했다고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⁵⁾ 실제로 2017년 사망한 고인의 누나가 사망 사실을 부인과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유해를 화장한 경우, 그것이 유언내용에 따른 것이었다더라도 제사 주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인의 장례나 매장에 대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도의적일 뿐 법률적 의무는 아니라는 취지다.⁶⁾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무리 생전 고인과 친밀한 관계인 사람이라도 유언을 근거로 장례를 했다면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유언을 근거로 장례를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민법」에 따른 유언에서의 ‘애도할 권리’의 범위는 제사 주재자를 중심으로 한 혈연관계가 여전히 우선된다.

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에서의 ‘애도할 권리’의 범위

2023년 용혜인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이 정의한 생활동반자관계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청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장혜영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이 아닌 성인과 다른 혼인 중이 아닌 성인 1인이 합의하에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생활돌봄을 상호적

4) ①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재산출연 행위, ② 친생부인(親生否認), ③ 인지(생부 또는 생모가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 ④ 양자, 후견인의 지정, ⑤ 친족회원의 지정, ⑥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지정 또는 위탁, ⑦ 상속재산의 분할 금지, ⑧ 유증, ⑨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⑩ 신탁 설정 등

5)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1672

6) 법률신문. 2017.1.24. “[판결] 아내·자식에게 알리지 말고 장례치러달라” 망인의 누나가 유언 따랐더라도 <https://www.lawtimes.co.kr/news/107608> (2023.9.10. 검색)

으로 주고 받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정의했다.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위해 발의된 이 법률안은 기존 혈연과 법률혼 관계의 가족 외에도 새로운 법률관계인 생활동반자관계인 사람에게도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가 보장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 이를 위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연고자의 범위에 ‘생활동반자’를 새롭게 포함했다. 하지만 생활동반자관계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과 나이 등을 근거로 다양한 관계를 배제했다는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발의된 법률안이 과연 생활동반자관계의 ‘애도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발의안을 살펴보면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다. 해소 시점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사망이 성립한 즉시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이 장례식을 하기 전에 사망신고를 먼저 한다면⁷⁾ 사망이 성립하여 생활동반자관계는 해소되게 되고 이후 장례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사망신고를 먼저 했다고 해도 다른 연고자들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앞으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애도할 권리’가 제한될 소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3.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를 위한 친밀한 관계의 범위

가족 유형 중 ‘비친족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비친족가구란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말한다.⁸⁾ 2016년 비친족가구 수는 약 27만 가구였으나 2020년 약 42만 가구로 증가하여 4년 만에 약 15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비친족가구의 가구원 수는 2016년 약 58만 명에서 2020년에는 약 9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⁹⁾

(단위: 가구,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친족가구 수	269,444	308,659	340,367	386,968	423,459
비친족가구원	583,438	673,784	746,930	840,936	912,878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혈연과 법률혼 관계를 넘어 친밀한 관계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혈연도 법률혼 관계도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인 ‘비혈연 친족’, ‘선택된 가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7) 용혜인 의원실 발의안에는 「의료법」 개정하여 생활동반자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혜영 의원실 발의안에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하지 않아 장례 절차 개시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8) 통계청, 「통계설명자료」(최종 검색일: 2022.11.15.),

<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orgId=101&confmNo=101001&kosisYn=Y> >

9) 통계청, 「인구총조사-세대구성별 가구 및 가구원(일반가구)」(최종 검색일: 2022.11.14.),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conn_path=13 >

가. 비혈연 친족(fictive kin)

비혈연 친족¹⁰⁾(fictive kin¹¹⁾)은 한국 사회에서 친밀하게 지내는 ‘이웃사촌’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비혈연 친족이란, 혈연과 법률혼 관계가 아닌, 종교적 의례나 친밀한 우정 관계 또는 유대관계를 기반한 가족과 유사한 유형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현대 도시 사회를 분석하면서 사회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케인(Kane)은 비혈연 친족에 대해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서로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핵가족으로 살기도 하고 또는 따로 살 수도 있다. 다른 관계에 비해 친구나 이웃들은 비혈연 친족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모나 삼촌과 같은 친족 칭호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였다.¹²⁾ 넬슨(Nelson)은 비혈연 친족의 유형을 갑작스러운 입원, 입소 등 불연속적인 상황에서 맺어지는 상황적 친족(Situational Kin), 관습의 일부로 종교 의례(대부-godfather, 대모-godmother) 등으로 맺어지는 의례적 친족(Ritual Kin), 자발적 선택과 의도로 맺어지는 의도적 친족(Intentional Kin)으로 구분하였다.¹³⁾

나. 선택된 가족(chosen family)

선택된 가족(chosen family)은 서로의 삶에서 돌봄 등 중요한 역할을 위해 의도적으로 서로를 선택한 개인들의 관계이다. 이 개념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그 유래를 두고 있다. 성정체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비난·소외되기 쉬웠던 이들이 혈연과 법률혼 관계가 아닌 실제적인 친분을 나누고 있는 자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선택된 가족의 개념은 생물학적 또는 법적 친척이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간주할 만큼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를 말한다. 선택된 가족 내에서 ‘가족’의 개념에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위로를 제공하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보장하고 헌신해야 할 책임이 포함된다. 위크스 등(Weeks et al.)은 선택된 가족을 고도로 헌신적이고 우정에 기반한 친족관계로 정의했고, 이러한 선택된 가족의 전형적인 특징은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소속감을 제공하는 비이성애적 라이프스타일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단계로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¹⁴⁾

이러한 “선택된 가족” 개념이 미국 사회에서 처음 등장한 시기는 베트남 전쟁이 끝난 해인 1969년도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전사자 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방 공무원이 마치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equivalent of a family relationship)’를 애도하기 위해

10) 의사(擬似) 친족(친척), 유사 친족, 가상 친족 등의 용어로 번역되기도 한다.

11) 많은 연구에서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는 가족과 같은 관계를 “pretend relatives”, “quasi kin”, “non-kin kin”, “pseudo-kin”, 그리고 “fictive kin” 등으로 다양하게 언급하였다(Rae, 1992: 228)

12) Kane, C. M., 2000, “African American family dynamics as perceived by family members”, *Journal of Black Studies*, 30, 691-702.

13) Nelson, M. K., 2013, “Fictive kin, families we choose, and voluntary kin: What does the discourse tell u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5(4), 259-281.

14) Kim, S., & Feyissa, I. F. (2021, March). Conceptualizing “family” and the role of “chosen family” within the LGBTQ+ refugee community: A text network graph analysis. In *Healthcare* (Vol. 9, No. 4, p. 369). MDPI.

장례에 참여할 경우, 조사휴가(funeral leav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현재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휴가 신청 사유에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의 돌봄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사후자기 결정권으로서의 ‘내 뜻대로 장례’와 ‘가족 대신 장례’

가. 사후자기결정권

우리 헌법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이는 개인이 생존했을 때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인수자가 없는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신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형제들과 30여 년간 연락이 단절되어 사실상 연고자가 없는 사람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사인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해부용 시체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한다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¹⁵⁾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시신 자체의 제공과 구별되는 장기나 인체조직에 있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이식·채취될 수 없도록 규정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실제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후 자신의 시체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만일 자신의 사후에 시체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본권 주체인 살아있는 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다.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은 자연인의 경우 살아있는 자를 그 대상 범위로 하는데, 개인이 생전에 사후를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라도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나. 내 뜻대로 장례와 가족 대신 장례

혈연과 제도를 넘어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가족 대신 장례’

15)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마940 결정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와 ‘내 뜻대로 장례’가 보장될 수 있는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내 뜻대로 장례는 명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장례와 사후사무를 진행하는 장례방식이다. 한편 가족 대신 장례는 명시적으로 장례와 사후사무를 위임하지는 않았지만, 생전의 고인이 장례와 사후사무를 진행해주기를 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즉 혈연과 법률혼의 관계가 아닌 사람이 가족 대신 장례와 사후사무를 진행하는 장례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혈연과 법률혼 중심의 가족에게만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법」 유언 관련 사항에 당사자가 사전에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이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진단서 발급 관련한 「의료법」, 사후사무의 최종단계로 사망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5.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를 위한 스웨덴의 장례복지

그렇다면 사후자기결정권으로서 내 뜻대로 장례와 가족 대신 장례가 법률적으로 보장된다면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 현재도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빈곤의 문제다. 즉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빈곤을 이유로 시신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가 무연고 사망자 증가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이다. 즉 ‘장례빈곤’이 문제다. 그렇다면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 범위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권리를 사회보장제도로 보장하는 ‘장례복지’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장례복지는 다른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장례지원금 제도를 국민들에게 지급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보험보다는 세금 재원에 의한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를 주로 받게 된다. 한국으로 보면, 일반예산에 의해 급여가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은 장례복지를 위한 장례요금(begravningsavgiften) 제도가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스웨덴교회(Svenska kyrkan) 홈페이지에 따르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묘지를 제공하고 고인의 운구를 담당하는 것은 스웨덴 교회의 업무로 본다. 이것은 그 사람이 신앙이 있었는지 아닌지와 그가 어떤 종교에 속해 있었는지에 관계없다(Svenska kyrkan, 2023)¹⁶.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교회가 국가를 대신하여 장례를 관리하는 전통이 있었고, 지금도 이러한 방식의 장례복지가 실현되고 있다. 스웨덴은 모든 사람의 장례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보편적 관점에서 장례복지가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마치며

16) <https://www.svenskakyrkan.se/begravning/begravning/nar-nagon-dor>

인구·가족구조의 변동과 다양한 가족 실천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살아 있는 동안뿐 아니라 죽음과 이후 장례 등의 사후사무에 이르기까지 어느 순간이든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다. 하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는 그 범위를 법률혼과 혈연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다. 애도의 순간에도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세상, 어느 한 사람도 박탈된 애도를 경험하지 않는 세상을 희망한다.

트랜스젠더퀴어의 삶, 가족, 가족구성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도균

안녕하세요.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트랜스젠더퀴어의 삶, 가족, 가족구성권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발제에서는 통계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트랜스젠더의 삶에서 드러나는 경향성, 그런 경향성이 트랜스젠더들의 가족구성에 미치는 영향, 실제 혈연가족이나 성적 파트너에 국한되지 않는 다수의 사람과 생활공동체를 꾸리고 산 경험이 있거나 그렇게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퀴어들의 욕구 등을 훑어보려고 합니다.

2020년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국가승인통계,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진행한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뜻깊은데요.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40퍼센트에 가까운 응답자가 가족 구성원에게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40퍼센트가 넘는 응답자가 가족구성원이 자신이 원하는 성별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가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응답을 했고, 경제적 지원이 끊긴 경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 가족들이 전환 치료를 시도한 경우, 집에서 내쫓긴 경우가 모두 각각 10퍼센트 가깝게 조사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혈연가족이 트랜스젠더들을 적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빈번한 셈인데요. 경험적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트랜스젠더퀴어들이 혈연가족이나 성소수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지역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 경우가 많았고, 여행자 내부에도 혈연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해온 트랜스젠더퀴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이동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중 소득이 없는 트랜스젠더의 비율이 절반이 넘었고, 85% 이상의 응답자가 월 2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행자에서 2018 성소수자 인권포럼에 참가해, 트랜스젠더퀴어의 노동과 관련한 세션을 진행했을 때도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알고 있는 사업주가 이를 빌미로 착취적인 노동을 강요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불법화된 일을 하게 되거나,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오랜 기간 일해온 직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9 to 6로 출근하는 직장을 구하는 걸 스스로 단념하는 경우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도 아예 구직 자체를 단념하거나 기간제 일자리 등 불안정한 노동만을 반복하게 되는 트랜스젠더들의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혈연가족과 살고 있던 지역사회를 떠나 이주한 트랜스젠더퀴어들이 많이 있을 때, 경험적으로 연애 관계 등 성적 관계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면서 끊임없이 빚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 동기에서 생활 공동체를 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거나 혈연가족 바깥에서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 서로 돌보면서 생활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장 여행자의 운영회원들을 살펴봐도 절반 이상의 운영회원들이 성적 관계에 한정되지 않는 다수의 인원과 생활공동체를 꾸린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생활동반자 등록법은 혈연가족과 성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생활공동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랜스 커뮤니티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다수 간의 생활동반자 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청소년의 생활동반자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등 기존의 법률혼 관계에서 정조 의무 정도만을 배제한 1:1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다수의 인원과 생활공동체를 꾸린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여행자 운영회원 세 분을 인터뷰했는데요.

자신이 꾸리고 있는 생활공동체가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함으로, 공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청약, 주택자금대출, 전세대출에서 공동명의로 진행이 불가능한 점 등 주거에 관한 부분, 상속과 연금 수령 등 재산권에 관한 부분, 입원, 수술 등 의료에 관한 부분 등을 공통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을 꼽아보자면 뽐님의 경우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가치를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역사나 의미가 담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줄곧 살아온 주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직은 상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귀속되거나, 적어도 당사자가 원했던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단지 금전적인 가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온 시간과 관계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럴 때 상속을 통한 재산권 보장은 생계나 재산 형성에서의 기여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가 계승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동반자 등록법은 법률혼과 달리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생활동반자 등록법 자체에 상속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는 방향도 가능하겠으나 반드시 관계에 대한 법적 등록에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결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나눔과 나눔에서 말씀해주신 사후자기결정권의 개념이 이 상황에서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언을 통해 내가 지정한 대상에게 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가꾸어온 것들을 상속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방향이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테로님의 답변에서는 "수술동의서 같은 건 제가 듣기로 딱히 법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고 절차적인 요소인데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수술동의서를 꼭 법적 가족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지만 그거 이전에 수술동의서를 꼭 쓰게 만드는 다른 사회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응답해주셨는데요.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들이 혈연가족을 중심으로 한 차등적인 관계의 위계를 강화하고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동반자 등록법의 제정이 혈연가족이나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파트너 관계에 한정되지 않는,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의 존재와 의미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혈연가족이나 법률혼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체계 등을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생활동반자 등록만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총체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헤일러님의 경우 "동거하는 사람이 취약해지는 순간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친족(가족)과 절연하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동거인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으로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해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삶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취약함,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 쉽게 따라붙는 다양한 취약함을 상호돌봄으로 대응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이미 현실에 존재하고 있고, 그 관계를 지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활동반자 등록법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를 만들어내는 법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관계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지금의 가족 제도를 보완하고 전환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전제한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생활동반자 등록법이 기존의 법률혼에서 정조의 의무 정도를 제외한 1:1 관계를 상정하는 방향이라면 커뮤니티가 가진 필요를 담아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존에 배우자, 자녀, 부모, 조손, 조부모,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 내 관계의 위계에 생활동반자가 명목상으로 추가되는 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법과 제도가 상정하는 가족의 형태와 그에 따른 법체계에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른 분들의 발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법적인 성인간의 관계로 한정되거나 국민/비국민 간에 차등을 두는 방식 또한 정말로 이 법을 통한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누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홍성수 연구책임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홍성수. (2020).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의 돌봄 실천을 통한 삶/관계의 재정의

서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전신인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약칭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2006년 7월 13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국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의 활동 초창기부터 줄곧 연대 단위로 참가해왔습니다. 2010년 12월 7일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개최한 제6차 가족정책포럼에서, 친구사이는 가족형태·가족상황에 대한 차별을 복합차별(compound discrimination)로 개념화하였고, 여기에는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게이를 비롯한 성소수자로서 겪는 차별 뿐만 아니라, 제도적 혼인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한부모 가족·비혼 가족·독신 가족·동거 가족·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에 대한 차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1] 이는 친구사이가 일찍부터 성소수자에 고유한 차별 경험과 더불어, 일견 낯설지만 실은 그것과 연결되어있는 다양한 차별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게이커뮤니티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운동단체로서, 친구사이도 동성혼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2013년 9월 7일 당시 친구사이 대표 김조광수와 친구사이 회원인 김승환 두 분의 결혼식이 진행되었을 때, 친구사이 내 합창 소모임 지보이스의 단원들은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다 혐오세력이 뿌린 오물을 뒤집어쓰기도 했고, 그해에 발족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현 혼인평등연대)에도 친구사이는 초창기부터 꾸준한 연대를 이어왔습니다. 이처럼 친구사이는 혼인평등과 동성혼 의제 또한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라는 의제의 차원으로 파악하고 그 중심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서의 가족구성권이란, 제도적 혼인을 포함해 현 단계의 제도가 인정하는 관계형태를 넘어서, 지금 여기에 이미 존재하는 관계들과 그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돌봄 수행에 주목하여,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인간의 삶과 관계와 가족과 혼인,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제도적 인정을 재정의하자는 포부를 담은 개념입니다.[2]

이에 따라 친구사이는 게이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관계의 실천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관계적 욕구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친구사이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실시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서, 전체 유효 응답자들(3,159명) 중 59.8%(1,823명)가 동성혼 법제화를 원했고, 36.1%(1,101명)가 법적 결혼이 아닌 시민결합 등의 제도적 인정 형태를 원했습니다.[3] 이러한 추세는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측에서 조사한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3,911명) 중 42.5%가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을 꼽았고, 38%는 결혼이 아닌 동성커플을 위한 파트너 관계의 법적 인정을 꼽았습니다.[4] 즉 성소수자들의 절반 가량이 동성혼 법제화를 원하는 한편, 적지 않은 비율의 성소수자들은 동성혼이 아닌 다른 형태의 법적 관계 인정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위 사실로부터 유추되는 것은, 게이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관계 실천과 그것의 법적 인정에 동성혼 법제화가 필수적인 의제임과 동시에, 동성혼이 아닌 형태의 법적 관계 인정에 대한 활동 또한 반드시 병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소위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이 ‘가족구성권 3법’의 이름으로 나란히 명명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5]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동성혼 법제화와 동성혼이 아닌 가족형태의 법적 인정을 동시에 욕망하는 만큼, 혼인평등법과 생활동반자법 또한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이, 서로간의 우열이나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은 채 반드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위 3법의 발의를 통해 천명된 셈입니다.

게이커뮤니티에서도 1:1 연애·로맨스 관계에 대한 욕망과 선망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이성애 사회에서 억압되고 금지되어왔기에 더욱 강렬하고 절박하게 추구되는 면도 강합니다. 하지만 게이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이 1:1 연애 관계를 욕망하는 것은 아니고, 욕망하더라도 자원의 부족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나아가 꿈에 그리던 1:1 연애·동거 관계가 성사되었다고 해서 당사자의 관계·돌봄 행위 및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알아서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1:1 로맨스 관계에 대한 동경과는 별개로, 친구사이 상담 채널에는 연애 관계를 맺고 상대를 기망한 사기 사건, 파트너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사례 등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제도적 결혼과 가족이 그러하였듯이, 성소수자의 연애 또한 그것을 장밋빛으로 경험하는 사람과 피해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어떤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변혁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인권운동의 준칙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까닭에 친구사이에서는 그간의 활동을 통하여, 게이커뮤니티의 구성원이자 단체의 회원으로 살아나갈 때 반드시 연애나 동반자 관계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삼지 않고, 단체와 커뮤니티의 지원과 돌봄을 통해 혼자서도 성소수자로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힘써왔습니다.[6]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 둘이서도 잘 살 수 있고, 여럿이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법적 혼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혼인평등이 중요하다면, 혼자서 무사히 살 수 있는 권리 또한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는 양쪽 모두를 위한 제도적 인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1인 개인의 입장에서 혼인·혈연관계가 아닌 형태의 가족/관계의 구성을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구상된 법입니다. 즉 생활동반자법은 게이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다양한 관계 욕구와 그것의 법적 인정의 형태가, 배타적 애정관계에 있는 2인의 법률혼 모델로 국한되고 그것이 유일한 옵션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은 서로를 대체할 수 없고,[7]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관계와 돌봄 실천을 현실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두 법과 각각의 법이 함유한 의제는 어느 것 하나 빠뜨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게이커뮤니티의 가족구성권과 동성혼을 놓고, 친구사이가 2015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주최한 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목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혼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결혼이 마치 완전한 제도처럼 취급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8] 가족구성권 3법 중 하나인 비혼출산지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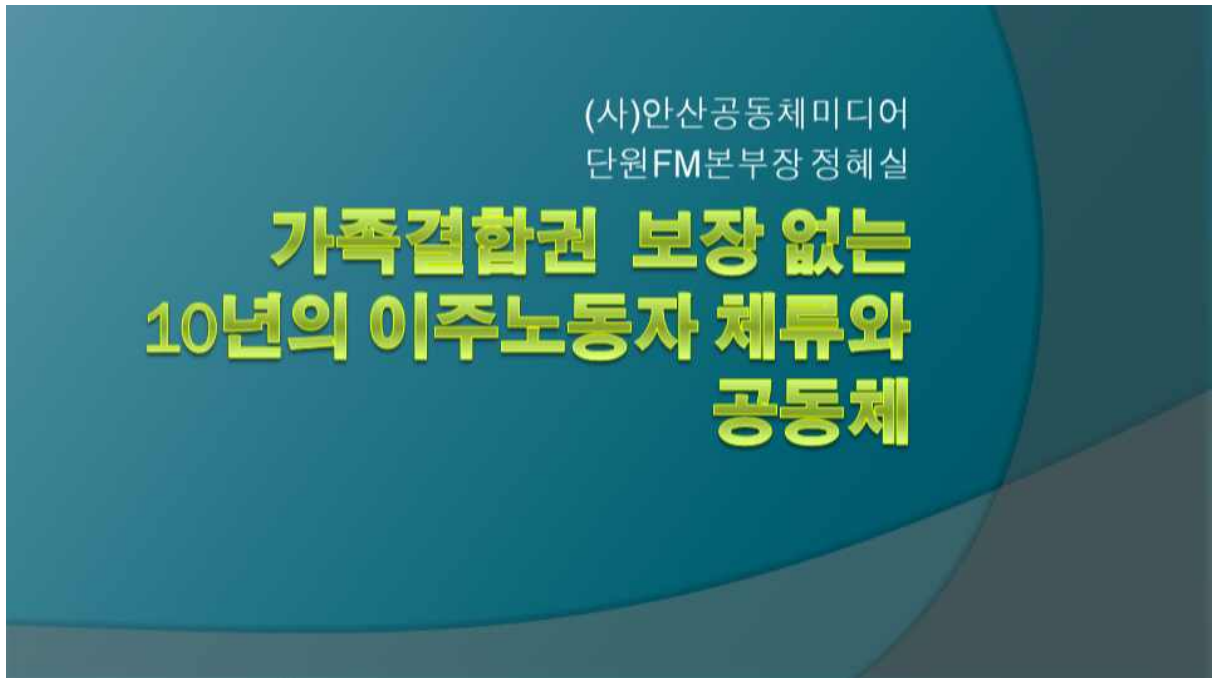
이 이미 기존의 제도적 결혼이 배제해온 비혼 출산, 미혼모 낙인에 대해 도전하고 있고, 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 또한 기존의 제도적 가족과 결혼 관계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부터 출발하였기에 이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애 결혼을 두고 “저런 식으로는 결혼하기 싫다”는 게이커뮤니티 내부의 여론을 경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사이를 비롯한 인권운동의 뿌리는 게이커뮤니티를 비롯한 현장에서 이미 실천되고 욕망되는 관계·돌봄과 거기서 비롯되는 정의일 것이고, 그곳에서 기존의 결혼과 가족이 과연 어떻게 새로 정의되는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치 게이커뮤니티에서 수행되는 항문섹스가, 안팎으로부터의 낙인에도 불구하고 섹스/관계의 쾌락과 욕망과 안전을 남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입장으로 새롭게 정의한 것처럼, 성소수자의 관계 및 돌봄 실천과 그것의 법적 인정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섹스가 그토록 남들과 같아지려 하였음에도 결국은 남들과 다르기에 존엄하였듯이, 우리의 관계 또한 그토록 남들과 같아지려 함에도 결국은 남들과 다르기에 존엄할 것이 분명합니다. 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새로 정의한 관계와 돌봄에 걸맞는 내용을 지니기를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 [1] 가람,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차별과 복합차별」, 『6차 가족정책포럼 : <가족상황차별>의 정의와 범주 - 차별금지법에 담기』(2010.12.7) 자료집, 가족구성권연구소,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서 가족” : 가족구성권연구소 창립 기념 발간자료집 2006-2018』, 2019, 48~53쪽에서 재인용.
- [2]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오월의봄, 2022, 14~15쪽.
- [3]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주요결과보고서』, 한국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22쪽.
- [4]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나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2022, 96쪽.
- [5]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동성혼 법제화, 비혼 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시대 요구에 응답하라」, 2023.5.31.
- [6] 이종걸, 「친구사이의 정체성과 운동적 맥락에서 짚어야 할 점들」, 『친구사이 회원 간담회 : 친구사이와 혼인평등 운동, 어떻게 만날 것인가?』, 2023.6.29.
- [7]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X 혼인평등연대, 『혼인평등의 여정에 함께 할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2023, 18~19쪽.
- [8] 「담론팀 기획토론 #3 : 동성결혼 제도화와 시민권」, 『친구사이 소식지』 58,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5.4 ; 「혼인평등 간담회 후기 : 친구사이와 혼인평등 운동, 어떻게 만날 것인가?」, 『친구사이 소식지』 156,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23.6.

가족결합권 보장없는 10년의 이주노동자 체류와 공동체

정혜실((사)안산공동체미디어)



○ 단기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추이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2년 7월	'23년 7월
인원	679,874	792,853	425,752	386,945	557,057	460,334	652,095
전년대비 증감률	13.8%	16.6%	-46.3%	-9.1%	44.0%	-	36.9%

○ 단기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23.7.31. 현재, 단위 : 명)

자격별	사증면제 (B-1)	관광통과 (B-2)	단기방문 (C-3)	단기취업 (C-4)	유학 (D-2)	일반연수 (D-4)	회화지도 (E-2)	예술흥행 (E-6)
인원	247,129	129,140	179,102	2,864	772	2,641	201	367
자격별	특정활동 (E-7)	계정근로 (E-8)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 (F-1)	동반 (F-3)	재외동포 (F-4)	방문취업 (H-2)	기타
인원	790	3,170	14,066	4,826	870	5,033	217	60,907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실현된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가족구성원의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는 국가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가족과의 동반이 가능해진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영주자격 외에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을 정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체류자격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하면서 일부 체류자격을 통해 가족의 입국 및 체류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4) 가족이민은 이렇게 가족과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를 허용하는 가족이민제도에 의해 실현된다. 현행 가족이민제도는 가족구성원을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의 신분에 따라 동반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와 체류기간 등 체류조건이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통상 배우자와 미성년인 미혼 자녀의 동반을 허용하지만, 주한외국공관원과 같이 일부 확대가족을 비롯해 동성배우자까지 동반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해 소위 ‘단순노무’ 영역에 종사하며 ‘저숙련노동자’로 불리는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국내 출생한 자녀 외에는 가족으로서 동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유사하게 저숙련노동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재량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 자녀의 동반을 허용하는 태도와도 다르다.

김지혜(2020) 『가족이민제도의 계층적 구조와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제한 비판』, 법제연구 제58호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이주노동자

10. 위원회는 한국이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에 적용되는 여타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a)가족결합을 용이하게 하고....

‘가족결합권’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⁷⁾은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 권리로서, 국가는 가족생활에 관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편 그 권리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가족과 함께 생활을 영위할 권리로서 가족결합권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기여도 등에 따라 조건부로 논의될 수 없다. 가족결합의 기회를 거부하는 제도적 공백은 가족분리를 초래하여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유지에 해를 끼치고, 미등록 이주를 촉진하는 조건이 되며, 이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방해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⁸⁾

앞의 논문 참고

이주노동자 vs 외국인거주자



유엔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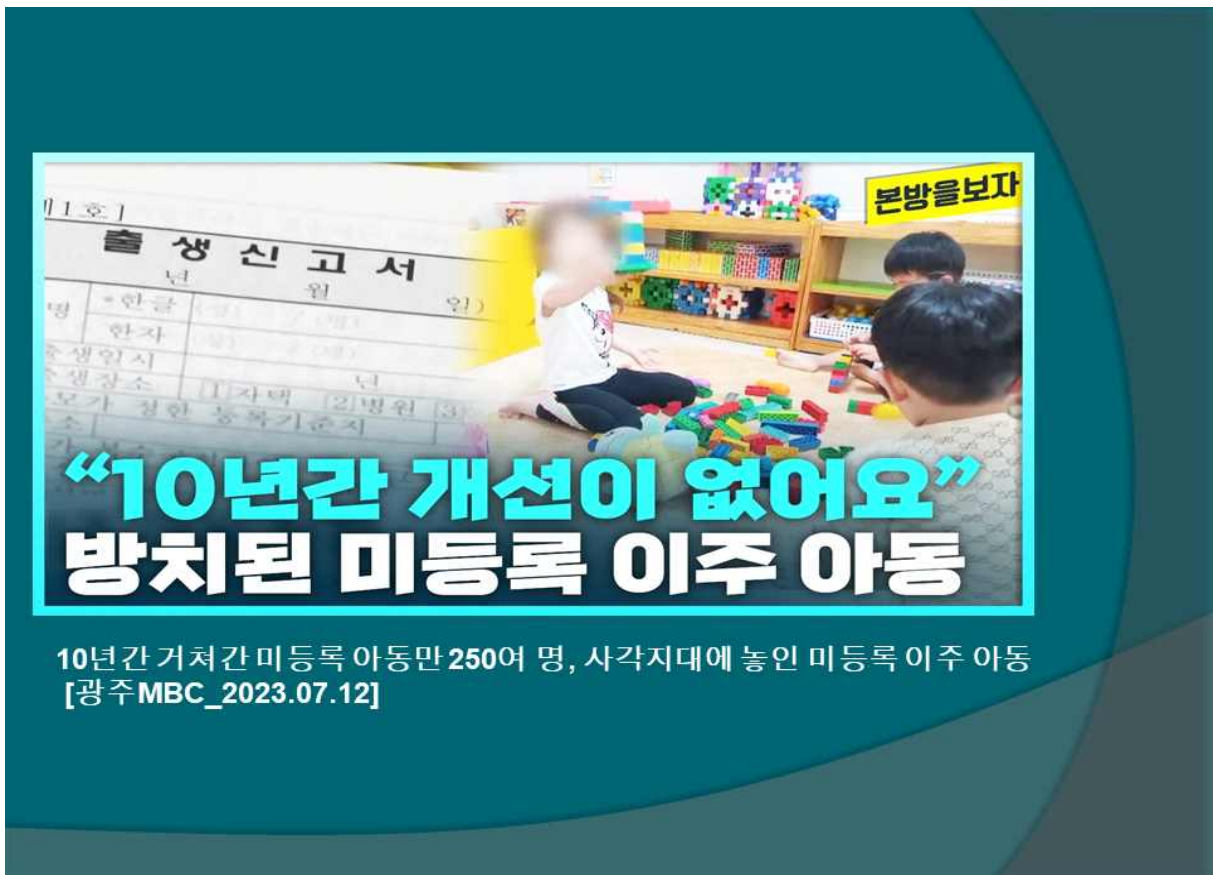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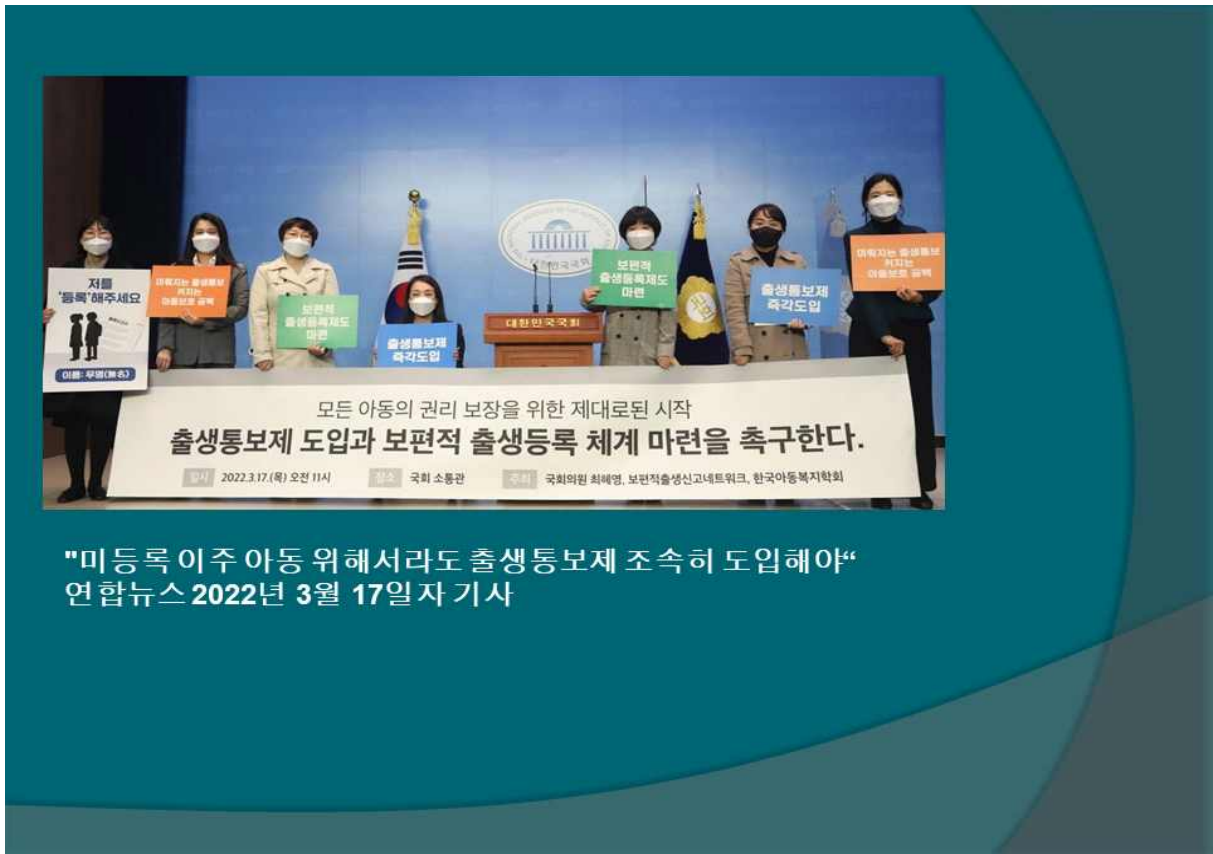
10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

5.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한국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간의 혼인에 국한되고, 외국인 부부 또는 동포 간의 혼인을 배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배제 때문에 “다문화가족”에게 보장되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으로부터 비호신청자 및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가족들이 제외되는 것에 우려한다. (제2조, 5조)

6. 위원회는 한국이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그 의미를 가족 구성원 중 최소 한명이 외국인(외국인 부부, 동포 가족 등)인 경우로 확대하여 차별없이 모든 가족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출산과 이주여성의 몸

1. 체류 자격(비자)에 따라 다른 몸
결혼이주여성의 강요된 출산과
출산이 금지된 이주여성노동자의 몸
2.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없는 이주여성노동자
사례)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
남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이주 노동하는 부부인
이주여성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임신사실을 알자
낙태 권유하여 무급 휴가를 내고 캄보디아에서 출산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논란

- “정부는 8월 중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올해 안에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명을 국내에 도입해 6개월 이상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해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 이라고 말을 꺼낸 뒤 육아와 가사 비용부담을 낮추고 여성의 고용단절, 저출생 문제 극복을 내세우며 빠른 속도로 추진됐다. ‘더 싸니까 더 이익이다’라는 단순한 논리 하나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돌봄이라는, 이 사회의 지속과 번영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노동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그저 줄여야 할 비용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무척이나 개탄스럽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2023년 8월 24일자 기사, 이해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돌봄 노동”의 전가, 가족 아닌 “입주 가사도우미”
누구의 출산인가? 누구의 가족인가?
입주 가사도우미는 생활동반자가 될 수 있나?

이주민 커뮤니티는 생활동반자가 될 수 있나?

사례 1) 파키스탄 교민회

이주노동자 사망시 장례비용마련 모금
및 장례식 후 시신 본국 송환

사례 2) 기숙사 내 거주 동료

동일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동거 및
서로 돌봄(위로, 간호, 식사, 여행...)

사례 3) 네팔도서관

힌두교적 종교 모임과 작은 도서관 활동
매주 1회~2회의 모임 (행사, 축제, 돌봄, 교류...)

사례 4) 인도네시아 무슬림 커뮤니티

안산 원곡동 공유하우스 렌탈
실직상태 동료 돌봄과 주말 모임(종교 외)

늘어난 고용허가 기간 10년,
이주노동자는 누구와 살 것인가?

장애여성의 돌봄과 탈시설 그리고 가족구성권

이진희(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시설권력을 강화하는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정책

혈연가족 및 이성애적 혼인 관계 중심의 한국 사회의 복지제도는 제도 밖, 다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한다. 장애인에게는 집과 시설에서 감금된 삶을 강제하고 보호주의에 기반한 억압과 통제를 정당화한다. 가족에게 떠넘겨진 부양의 책임은 개별의 몫으로 남겨지거나 시설의 권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는 가구 소득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구 인원내 따른 소득인정 범위 내에 있으면서 가족이 부양의무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중단/단절된 상황이 인정되지 않아서 탈시설을 포기하는 상황이 많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즉 가구를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장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국가가 돌봄의 책임과 권한을 ‘가족’에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장애인의 권리를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박탈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정의)에서는 시설과 가정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며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시설이 가족을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보장시설 수급은 ‘수급자에게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정되도록 관리하고 시설에 위탁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법상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로서 시설장이 세대주로 관리되는 것이다. 그렇게 시설장은 ‘가족’을 대신하여 입퇴소 결정을 포함한 거주인의 생사여탈권을 가진다.

가족주의 기반의 정책은 시설이 가족의 형태로 재생산되는 것을 목인한다. 현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장애연금, 수당 등 금전을 직접 관리하는 원칙과 일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반 수급자와 동일한 형태로 시설생계비를 본인이 수령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시설 소규모화 정책이다. 자기결정권이 부정되는 체계 속에서 시설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가족구성권 운동은 정상성을 기반으로 가족을 정의하고 시민권을 선별하거나 사회적 재생산을 막는 차별적인 제도, 낙인을 깨나가는 운동이다. 현재 생활동반자 법안의 부칙에 따르면 생활동반자 관계의 형성과정이 가족에 준하는 역할을 갖게 하지만¹⁾ 이에 따른 의무는 없다. 생존과 돌봄에 대한 책임이 또 다시 국가의 역할이 아닌 가족과 생활동반자 1인의 역할과 권한으로 전가될 수 있는 점을 면밀하게 살펴봐야한다. 정상가족을 해체하는 것은 기만적인 시설수용정책을 폭로하고 탈시설 권리를 실현하는 정치적인 실천이다. 생활동반자법이 시설화 된 관계를 해체하고 내가 원하는 삶과 관계를 상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실현되려면 탈시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제도적 기반과 조력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장애인의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위한 실천은 시설화된 삶을 강요하는 가구 중심의 지원제도를 완전히 해체하는 동시에 시설 폐쇄 및 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젠더 폭력을 탈하는 대안적 관계 맺기

장애여성공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지원제도를 "장애여성의 시설화된 삶을 공모하는 감금회로망²⁾"이라고 비판한다. 제도적-법적 기준에 부합된 '피해자'임을 철저하게 입증해야 지원이 가능한 제도 앞에서 피해자들은 피해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고소를 원하지 않을 때는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만 보더라도 가구소득이 주요 기준으로 가구소득에 가해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소득은 있으나 장애를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경제권이 철저하게 박탈된 경우는 실제 주거지원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여성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러한 주거지원 등 제도적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다. 장애여성이 원가족과 사는 경우 장애제도, 주거 및 지원기금 관리 등을 활용하여 가족구성원과 함께 혜택을 수혜받도록 하지만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은 장애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 과연 누가 누구를 돌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생활동반자 법안 제8조(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금지) 및 제14조의 3호(제8조를 위반한 경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제8조 1항에서 혼인 중인 사람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장애여성들이 가정폭력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거나 해소가 지연되는 이유는 경제적 사유, 추가적인 폭력의 두려움, 상대방의 비협조, 자녀의 문제, 폭력의 내재화 등 매우 다양하다. 본질적으로 당사자가 혼인관계 이외에는 다른 대안적 관계를 상상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주변의 자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 3 제1항 (장기요양보험 및 수급권의 대리신청)

2) 나무, 「피해자는 어떻게 동료시민이 될 수 있을까」, 『2021년 IL과 젠더포럼 시설사회, 제도화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현재와 미래』, 장애여성공감, 2021, 5. 9

이 없고, 지원제도 등 사회적인 대안이 없다. 따라서 가부장제에 기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감수하며 가족 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 때 제35조(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등) 7항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명시조항은 기존의 지원기준과 방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이 의미가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라는 위치로 국가지원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수사-법적 기준 중심의 피해 입증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생활동반자 관계 모색은 쉽지 않다. 장애여성을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프레임이 깨지지 않으면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내에서 보호의 다른 이름인 ‘통제’속에 있어야 한다. 아니면 원(가족)집단 해체 이후 또 다른 ‘통제’가 가능한 집단 혹은 공간으로의 이동만이 가능한 것이다. 규범화된 제도들은 장애여성을 ‘피해자’, ‘가족돌봄의 대상’으로만 위치시킬 뿐,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동료들과 상호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지 않으며 다른 관계를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 생활동반자법이 혼인관계를 기본 전제로 두며 생활동반자의 관계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젠더폭력의 문제로 다시 해석해야 한다. 생활동반자 관계가 혼인 관계에서(혼인 해소 결정을 위한 대안적 관계와 체계), 가족관계, 젠더 폭력으로부터 탈출할 가능성을 전제하는 관계에 도전할 때 ‘탈가정’ 또한 적극 모색할 수 있으며, 상호 돌봄의 동반자관계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활동반자 관계로 실현하는 탈시설 권리

탈시설 지원정책의 하나인 지원주택은 시설과 다른 삶의 조건을 만드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을까. 지원주택은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의미한다. 탈시설 장애인이 안정된 거주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주거유지 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입주자의 모든 지원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지원주택 운영주체에게 부여하는 구조는 시설화의 가능성을 높인다. 다음은 퇴거 사유로 명시된 내용이다. ‘(계약사항이었던)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주기적으로 만나지 않는 경우, 주택 이용에 대한 기본규칙을 어기는 경우,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지원주택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4시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등의 경우³⁾’다. 지원주택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퇴거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만 당사자의 결정권은 논의되지 않는다. ‘의료적 지원기준’의 경우는 지원주택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을 전제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중증의 장애인은 의사결정능력을 이유로 지원주택 입주 선정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장애인은 혼자 살수 없다는 전제를 두

3) 서울주택도시공사 (2019년 5월).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 8p.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고 지원이 관리·보호·통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결국 당사자의 동의, 의사, 자기 결정권을 누가 지원하는가에 있어서 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

생활동반자 법안 제7조를 보면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직 ‘성년’으로 규정된다. 원가족 외 동반자관계가 필요한 청소년 혹은 장애인은 ‘피성년후견인’으로 분류되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애초에 피성년후견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결정권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동반자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기존의 규범화된 기준은 본 법안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안한다. 피성년후견인의 동반자관계 형성을 금지하는 맥락은 의사결정 및 판단 능력이 없다고 규정되는 이들이다. 피성년후견인도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으며, 삶의 대안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 본 법안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점은 충분히 차별적이다. 또한 본 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에서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한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위배된다. 성년후견인의 문제점은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808조(동이가 필요한 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명시한 후견개시 원인이 소멸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견개시 종료 또한 어렵다. 즉, 당사자가 원치 않더라도 성년후견인은 지속해서 당사자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동반자관계의 결함과 해소에서 성별, 연령, 장애 등 포괄적으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7조 2항에 당사자의 결정을 권한을 가지고 대리하는 방식이 아닌 지원하거나 조력하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제7조 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능력’이 아닌 ‘제7조 생활동반자 관계형성의 차별금지’로 해당 조항의 제목을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 본 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 형성 능력을 기존의 규범화된 기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생활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별, 연령, 장애 등 포괄적 권리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시설 정상성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의 모델이 탈시설 이후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이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시설 밖에서도 다른 삶의 조건을 만들기 어렵다. 탈시설 운동에서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또다시 ‘가족’에게만 의존되는 또 다른 고립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자립이 가능한 사회적인 토대를 요청하는 것이며, 상호적 돌봄과 관계성이 불가능한 ‘무력하고’, ‘순응적인’ 존재로서의 낙인에 개입하는 과정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느 공간에서 누구와 살지, 선택할 수 있는가? 허락과 승인 없이 다양한 삶의 형태를 상상할 수 있는가? 가족이 아니면 시설 입/퇴소를 결정할 수 없는 지금의 구조가 아닌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탈시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생활동반자 8조(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금지) 조항을 보면 혼인을 할 경우 혹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이미 맺은 경우에는 다른 생활동반자를 만드는 것은 금지되고, 일대일 관계로 권한을 독점하는 관계가 아닌 장애여성들 간의 동료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도 의

4) 김순남, ‘강제된 장소, 강제된 관계를 질문하는 탈시설 운동’, 시설사회, 2019년, 35쪽

존하고 조력과 지원을 나눌 수 있는 생활동반자 관계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때 기존의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보호와 안전을 넘는 울타리의 의미

장애여성운동은 독립적인 삶이란 의존과 돌봄을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며 독립이란 어느 특정 시기에 도달해야 완성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실패하고 도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독립을 혼자 힘으로 책임지도록 강요하는 것은 온전한 독립을 위해 필수적인 상호 의존과 돌봄을 독립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장애인의 독립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첫째, 돌봄의 영역이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과 개인 안에서 응당 감당해야할 문제가 될 때, 가족이 없는 혹은 가족이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시설에 수용되거나 사회 밖으로 사라지게 된다. 동시에 일방적 돌봄을 받는 위치로 장애인을 위치지음으로써 가족내 장애인들의 권력은 약화되고, 평등한 관계맺기는 불가능하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의존과 돌봄을 이야기할 때 장애, 노인, 아동 등 취약한, 돌봄이 필요한 몸으로 인식되는 이들을 특정하지만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나 숨겨진 돌봄-의존, 혹은 공공화 된 돌봄은 노동의 대가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장애의 경험은 성장과 개발이 보편인 시대에 저항할 수 있는 남다른 감각이다. 온전히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돌봄에 기대 살아간다는 진실을 몸으로 보여 주며,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아프고 늙은 사람을 돌볼 것이라는 믿음에 도전한다. 그러나 독립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번번이 꺾였고 존엄보단 쓸모의 증명을 강요받아왔다. 우리는 긴 시간 꺾여온 부당한 경험이 개인의 불운과 능력의 결과가 아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 권리를 박탈당하고 자원이 없는 이들이 독립에 도달하지 못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의존과 돌봄없는 독립은 불가능하다.’⁵⁾ 사회적 재생산 관점은 취약한 집단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구성원을 사회적 존재로 유지하기 위한 공적 돌봄의 제공을 강조⁶⁾하는 것은 장애여성운동에서 실천해 왔던 상호돌봄의 대안적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과 중요하게 연결된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체계를 변화를 실천하려면 서로의 몸에 익숙해지고, 뒤섞이고, 오염되기도 하면서, 스며드는 관계⁷⁾가 보장되고,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게 살라는 명령의 거부와 불안하고자 하는, 불안하고 싶은 욕망⁸⁾을 함께 하는 것이

5) 장애여성공감, 20주년 기념 선언문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 2018. 2. 2

6) 김현미, “코로나 시대의 ‘젠더 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의 미래”, 『젠더와 문화』 제13권 2호

7) 진은선,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는 깔끔한 관계는 불가능하다’, W/O/F, 2022.11.9, <https://wof-nextjs.vercel.app/?artist=12>

8) 이진희, ‘국가권력을 가해하는 불안과 즐거움을 욕망할 권리를 고민하며’, 숙명인문학연구소 HK+

III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가능하다면 모두를 위한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는 가족이 보호해주는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가족, 시설이 만들어 준 울타리가 아니라 가족을 구성할 권리, 내 울타리는 내가 정해야 안전해진다. 울타리는 감금의 장벽이 아닌 내가 만드는 지지와 돌봄이다. 가족구성권운동은 돌봄 관계를 맺는 동료들 함께 탈시설을 권리로 만드는 과정이며 시설사회를 해체하는 운동이다.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포스터

2023.09.22 (금) 14:00-17:00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강당 (서울시 마포구 환일길 13)

생활동반자법과 그 너머의 가족구성권을 실천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론장

기조발제 기존 '가족' 너머에서 사회적 연대의 장을 모색하는 퀴어가족정치
김순남 | 가족구성권연구소

발제 생활동반자법과 어린이·청소년의 가족구성권
빈둥 | 청소년인권운동단체 지음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를 위한 친밀한 관계의 범위
박진옥 | 나눔과나눔

성소수자의 돌봄 실천을 통한 삶/관계의 재정의
터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가족결합권 보장없는 10년의 이주노동자 체류와 공동체
정혜실 | (사)안산공동체미디어

주거 정책에서 호명되지 않는 존재들
김경서 | 민달팽이유니온

트랜스젠더퀴어의 삶, 가족, 가족구성권
도균 |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장애여성의 돌봄과 탈시설 그리고 가족구성권
이진희 | 장애여성공감

참가신청

※ 행사참가비는 자율 후원입니다. 신한은행 100-033-201548 가족구성권연구소
※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이 진행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가 어렵습니다.

공동주최
가족구성권연구소, 나눔과나눔, 민달팽이유니온,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언니네트윅, 장애여성공감, 청소년인권운동단체 지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안산공동체미디어



공동주최

가족구성권연구소, 나눔과나눔, 민달팽이유니온,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회복지연구소물결,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안산공동체미디어